

고 시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4-63호

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제 2007-196호(2007.06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11호 (2008.04.03.)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2010.06.24. 조합설립 인가, 성북구고시 제2015-74호(2015.05.07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성북구고시 제 2020-122호(2020.07.0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성북구고시 제2023-132호 (2023.08.31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하고,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9일

성 북 구

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-55번지 일대(105,136.9㎡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윤찬웅)
 -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9길 33, 3층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4년 5월 3일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 분		대지면적(㎡)	동 수	층 수	세대수	연면적(㎡)
공동주택	분 양	52,805.9	15	지하3층 / 지상33층	1,352	218,749.26
	임 대	7,467.11			285	59,819.55
	소 계	61,420.6			1,637	215,423.74
상가		675.59	2	지하1층 / 지상2층		2,854.87
종교		482				

나. 토지이용계획

총 계 (㎡)	택 지(㎡)			정비기반시설(㎡)				
	소 계	공동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 계	도 로	공원	녹지	공공
105,136.9	105,136.9	60,948.6	472	41,976	17,935.6	22,625	1,414	1,741.70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근린생활시설면적(㎡)
	계	39㎡	46㎡	59㎡ (2주택)	84㎡	105㎡	106㎡	
계	1,637	129	126	503	818	2	59	2,854.87
토지등 소유자	620			99 (57)	462		59	2,854.87
보류시설	14			4	8	2		
일반분양	718			370	348			
임 대	285	129	126	30				

라. 신설 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

구 분	용도폐지			신 설				
종 류	소 계	도 로	도로 외	소 계	도 로	공 원	녹 지	공공청사
규모 (㎡)	27,502	26,251	1,251	43,716	17,935	22,625	1,414	1,741.7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완료

7. 관계도서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835)에 비치. 끝.